

국방부령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연 월 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단기복무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가능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계속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적용(안 제3조제1항제1호)

1)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, 학위, 성직 취득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함에 따라 장기복무 지원 기회(임관 2년차 이후)가 제한적임. 이에,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종장교가 장기복무 선발에 필요한 관찰기관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 이탈하여 인력 pool 구성 및 우수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.

2) 따라서, 임용 최고연령(35세)까지 가능한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연령을 복무연장과 동일하게 38세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계속복무를 위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일부개정령안, 신·구조문대비표

국방부령 제 호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연장하고,”를 “연장하고, 장기복무 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자격기준)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. 다만, 「군인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제3조(자격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<u>연장하고</u> ,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.	1.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장하고, 장기복무 또는</u> ----- ----- -----.
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